

8.1(목)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0.5% 인상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2-2110-546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0.5% 인상한다고 밝혔

◎ 금번 요금인상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가스공사 도매공급비용의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임

- * 도시가스용 도매공급비용 : (현행) 1,171원/MJ → (변경) 1,282원/MJ
- * 가스공사 총괄원가 : ('12년도) 2조 335억원 → ('13년도) 2조 3,624억원

■ 가스공사 도매공급비용은 매년 5월 1일자로 산정, 소비자 요금에 반영·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연중 도시가스 수요가 가장 적은 8월에 조정하게 되었으며

◎ 금번 요금조정으로 가구당 8월 평균 요금(주택용)은 현재보다 약 116원/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가구당 8월 평균 요금 : (조정전) 10,832원 → (조정후) 10,948원
- * '12년 8월 가구당 평균 사용량 517MJ 기준

■ '13년도 도매공급비용은 전년대비 3,289억원 증가한 2조 3,624억원으로 '12년도 도매공급비용 정산분

- *(2,316억원), 미공급지역 배관 건설사업(투자보수 684억원) 등이 주요 증가원인
- * 도매공급비용은 당해연도 판매물량을 예측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회수 금액과의 차이를 차년도 공급비용 산정시 반영하여 정산하는 구조

◎ 금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13년도 도매공급비용(1,282원/MJ)은 최근 5년간('08~'12년)의 도매공급비용 평균(1,351원/MJ)대비 낮은 수준

- * 도매공급비용 추이(원/MJ) : ('08)1,4492 → ('09)1,3648 → ('10)1,5573 → ('11)1,2172 → ('12)1,1711 → ('13)1,2829

■ 가스공사는 도매공급비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등 사업성·소비성 경비의 약 12%에 해당하는 650억원을 긴축·절감하기로 하였고,

◎ 본부장이상 간부들이 금년도 기본급 인상분 2.89%를 반납할 계획임

〈8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서울시 소매기준)〉

(단위: 원/MJ)

구분	현행(A)	변경(B)	증감(B-A)
평균	20,5173	20,6291	0,1118 (0.5%)
주택용(취사용)	20,8064	21,0297	0,2233 (1.1%)
주택용(난방용)	20,9316	21,1549	0,2233 (1.1%)
업무난방용	21,7264	21,7929	0,0665 (0.3%)
일반용(영업용1)	21,8235	21,8740	0,0505 (0.2%)
일반용(영업용2)	20,8218	20,8723	0,0505 (0.2%)

* 일반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요금 구성 ('13.8월 서울시 기준)〉

(단위: 원/MJ)

소비자요금	=	원료비	+	가스공사 도매공급비용	+	도시가스사 소매공급비용
20,6291 (100%)		18,2503 (88.5%)		1,2829 (6.2%)		1,0959 (5.3%)

가스도 전기처럼 ‘가스콘센트 (상자콕)’에 꽂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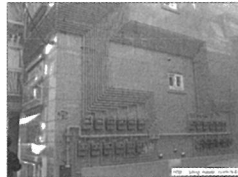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2-2110-544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7.25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 [건축물 가스배관 매립 가능] 현재 외부에 노출되어 문제가 많던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현행) 외부노출 원칙 → (개정) 안전설치기준을 정해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

-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선

- [가스 콘센트 설치 가능] 현재는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간단한 가스콘센트(상자콕*)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 될 예정이다.

* 건물 바닥·벽면에 부착이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 기기 접속기(전기 콘센트와 유사)

- 이사시 전출자는 배관 막음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새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가스 배관에 연결하는 비용(3만원)도 줄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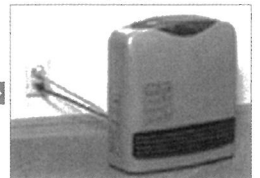
현행



개선



현행



개선

- [가스계량기 외부설치 유도]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 (개정) 가스계량기를 계량검침·교체·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토록 규정하여 외부설치 유도, 내부 설치시 원격디지털 표시기설치 등 외부검침 가능토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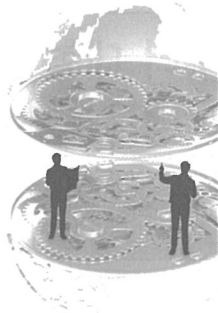
- 이렇게 되면, 가스 계량검침으로 발생 가능한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되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개방형온수기 설치금지]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 앞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 (개정) 액화가스안전관리 사업법에서 개방형 온수기 제품 제조·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개방형온수기 설치를 금지토록 규정

- 이로 인해, 욕실·미장원 등의 개방형 온수기 불완전연소로 인한 CO중독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상세기준, 통합고시 등)를 8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감전위험 어댑터 5개, 어린이 보조 카시트 6개 리콜명령

안전사고 위험있는 어린이 보조
카시트 리콜조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 02-509-7246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13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공기청정기, 전기청소기,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의 생활제품 20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
 - ◎ 조사결과, 감전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이하 “어댑터”) 5개, 직물형태의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6개 등 11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어 리콜명령함(리콜조치율 : 5.3%)
- 리콜조치된 11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품별 상세 결함내용은 붙임 참조)
 - ◎ 어댑터 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트랜스포머) 및 PCB패턴 등을 임의 변경하여 절연거리가 매우 짧아(최중 결함)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감전의 위험성이 있음
 - ◎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이하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 6개 제품은 3점식 안전벨트(안전벨트가 어깨와 허리를 지나가는 방식)가 설치된 좌석에만 설치해야 하며,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키는 끈이 없어야 하나,
 - 2점식 안전벨트(안전벨트가 허리만 지나가는 방식)가 설치된 좌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킬 수 있는 끈을 매달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주로 사용되고 것으로 드러남
 - 이는 비상시 차량 안전벨트와 보조 카시트 벨트 둘다 풀어야만 되므로 탈출시간이 지연되어 어린이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소비자의 오용을 유발하고 있음
 - ◎ 이처럼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가 통학차량에 오용되는 경우 사고시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기 위해, 2점식 안전벨트로 고정하여 충돌시험을 한 결과,
 - 6개 제품 모두가 등받이 고정 끈이 끊어지거나 벨트가 파손되어, 어린이 상체가 앞으로 크게 움직여져 머리부상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하여 주어야 함
 - ◎ 특히,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에 통보하여 제품 회수율을 높이고 올바른 제품 사용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임
-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임



9월부터 대형 풍력발전설비 국내 인증시대 열린다!

7. 30(화), 예기연, 재료연구소, 한국선급, UL(美) 등 4개 기관
대형풍력(750kW 초과) 대상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02-509-7273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13. 7. 30(화)일자로 750kW초과 대형 풍력발전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으로, 에너지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선급, UL 등 4개 기관을 지정하고, 9월 1일부터 인증서비스를 공식 시행한다고 밝힘
- 그간에는 국내 기관의 시험·인증 기술력 부족, 시험설비 미비 등으로 소형(30kW 이하), 중형(30kW~750kW)만을 대상으로 인증을 시행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7MW급 대형풍력 설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평가 및 성능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번엔 마련된 대형 풍력발전설비 인증 기준은 국제표준인 'IEC 61400-22(풍력발전기-제22부: 적합성 시험 및 인증)'을 기반으로 하므로, 4개 기관이 발행한 시험 결과는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가능함

- 대형 풍력발전설비 대상 성능검사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그 동안 해외 기관에 의존해왔던 시험·검사를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그간 관련 기업들이 겪었던 많은 시간적, 비용적인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성능검사기관으로 해외기관(UL)도 지정함으로써 설계평가 및 시스템 부분에 대한 선진 인증기술을 국내 기관과 공유하게 되어, 향후 국내 인증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대형 풍력발전설비 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기관의 역할을, 이번에 지정된 4개 성능검사기관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시험·검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설계평가 부분은 한국선급과 UL(舊 DEWI-OCC)이,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핵심 부품은 재료연구소가, 출력·하중 시험, 소음시험, 전력품질시험 등 시스템 부분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舊 DEWI)이 각각 담당할 예정임
- * 참고로 UL(미국)은 2012년에 독일의 풍력발전설비 시험·인증기관인 DEWI, DEWI-OCC(DEWI 자회사)를 인수
- 대형 풍력발전설비 인증 대상은 국내외 풍력발전 제조업체가 생산하여 국내에 설치되는 대형 풍력 설비로, 현재 현대중공업, (주)효성, (주)DMS,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업체와 Vestas(덴마크), Siemens(독일) 등 해외 업체가 대상 제품을 생산 중임

- 앞으로 대형 풍력발전설비 인증을 받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 보급사업 우선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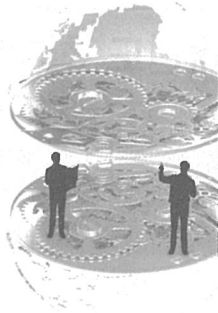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연도별 의무공급량(%): 2012년 2.0%, 2020년 8.0%, 2022년 이후 10.0%)

- '12년 기준, 세계 풍력발전 누적 용량은 282GW(육상: 276.6, 해상: 5.4)이며, 12년 신규 설치는 44.6GW(육상: 42.7, 해상: 1.9)로 전년 대비 19.2% 성장하였고, 향후 2020년까지는 설치용량이 1,000GW(연평균 성장률: 17.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누적 설치용량이 483MW로, 누적 설치총량 기준으로 세계 대비 1.7% 수준임

* 자료출처: WWEA(세계풍력에너지협회) 2012 Annual Report, 에너지관리공단

-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 김정환 국장은 "이번 대형풍력 발전 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과 인증을 계기로, 국내 생산(수입) 대형 풍력발전설비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힘



“달리면서 충전” 세계 최초 무선충전 전기버스 운행

구미에서 일반도로 운행...
충전소 · 대기시간 필요 없어

문의 | 국토해양부 044-201-3842

- 고가의 충전시설과 긴 충전 대기시간 없이 달리면서 실시간으로 무선급전에 의해 무선충전이 가능한 무선충전 전기버스가 세계 최초로 일반도로 위로 운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세계 최초로 도로를 달리면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무선충전 전기버스의 시범운행 개통식을 6(화)일 구미시에서 거행한다.
 - ◎ 본 시범운행은 국토교통부와 국가 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여, 무선충전 전기버스 상용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1.12월부터 '13.6월까지 차량 및 무선충전인프라 개발(KAIST 및 (주)동원올레브 외 30개 기관), 전기안전 시험 및 평가(한국전기안전공사), 차량 안전검증 및 인증(자동차안전연구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 ◎ 구미시는 '12. 12월 공모를 통하여 무선충전 전기버스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시범운행 구간은 구미역과 인동 지역을 잇는 구미시 주요 간선도로, 왕복 24km 구간이다.
 - * 시범사업 : 무선충전 전기버스 2대, 5개소의 급전시설을 설치·운영
- 구미시와 KAIST 무선전력전송연구단은 무선충전 기술을 이용한 전기버스가 일반도로를 달리는 일이 전 세계 최초인 만큼 개통식 이전에 먼저 시험운행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개통식 이후에는 시민들에게 전기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 할 예정이다.
 - ◎ 개통행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험운행을 실시하여 차량 동작, 급집전 충전장치에 대한 연동 시험 및 안전을 점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고,
 - 이번 시범운행 개통식을 시작으로 일반시민에게 무선충전 전기버스 시승기회를 제공하고, '14년부터는 구미시와 협의된 버스노선에 따라 정상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 * 시승 운행계획 : 1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오전 09~오후 06시까지 총 4회(오전 2회, 오후 2회) 운행 예정(나머지 6회 연구개발 수행)
- 한편 무선충전 전기버스(OLEV, On-Line Electric Vehicle)는 KAIST가 개발한 SMFIR(Shaped Magnetic Field In Resonance, 자기공진형상화기술)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주행 및 정차 중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달릴 수 있도록 개발된 신개념의 전기자동차로서
 - ◎ 2010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의 '세계 50대 발명품'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의 '세계 10대 유망기술'에도 선정되는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달리면서 실시간 무선 충전이 가능하므로 고가의 충전시설과 긴 충전 대기시간이 필요 없고, 이격거리 20cm 이상에서 100kW(136마력)의 전력을 평균 75% 이상의 효율로 공급받을 수 있어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상용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 특히, 비접촉 무선 충전방식이라 감전 위험이 없어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였으며, 무선충전 전기버스가 지나갈 때만 전력이 공급되는 세그먼트 제어기술을 적용하여 평상시 자기장 발생은 물론 대기전력 손실 우려까지도 말끔히 해소하였다.
- 국토교통부 박종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무선충전 전기버스가 상용화 된다면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 분야의 선도국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

고용노동부 8월 2일 고시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2-2110-7399)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2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후 7월 10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쳤으나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5,21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1,6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088,89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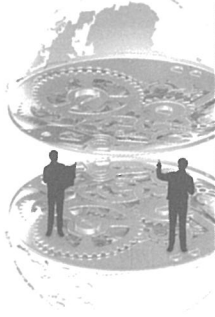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 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금년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였다.” 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5,21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5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업종별 협회·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자율적인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의·반복적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키로!

- 근로자의 위험상황신고 활성화로 긴급 대피 확보
- 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안전시설 투자 확대
-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 강화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2-2110-7399)

■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파열사고, 방화대교 램프 상판 낙하사고 등 건설분야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1) 위험상황신고 활성화

- 우선 근로자들이 작업중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관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에 즉시 신고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는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이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사업주가 작업을 강행할 때 근로자가 직접 감독기관에 신고를 하여 긴급 대피를 하는 등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하는 등 조치를 하게된다.
 - 이를 위해 신고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토·일요일 등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2) 위험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 또한 대형 건설 현장 등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는 PSM 사업장 등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위주로 집중관리 해 오던 것을 건설 등의 위험 사업장을 포함, 2000개소의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확대·재편하였다.
- 한편, 재해율이 우수하여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던 일부 건설업체에서 재해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확인 감독을 강화하고, 대상업체 심사도 보다 엄격히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현실화

-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재해가 건설 불경기와 맞물려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 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평균 7.6%)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입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 * 현행은 공사금액, 공사종류에 따라 직접노무비+재료비의 0.94~3.18% 계상(불입 참조)
 - 안전관리시설 투자를 직접 수행하는 하청업체에게도 제대로 전달 되도록 전달체계도 투명화 할 계획이다.

4) 공공 발주공사 관리강화

- 최근에 공공 발주공사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기관별 산업재해 현황(재해율,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의 산재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또한,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이 우기 돌발사고, 안전상 긴급한 조치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건설현장의 공기단축은 연장·심야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등 무리한 작업을 유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 동안 문제점이 계속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낮은 안전관리 투자,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 “앞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